#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35

발의연월일: 2021. 5. 24.

발 의 자:김성원·태영호·김정재

이주환 · 이종배 · 박덕흠

김용판 · 박대수 · 윤상현

이 영ㆍ이 용ㆍ임이자

최형두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는 관공서가 쉬는 날 민간부문이 참고해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70년 이상 국민의 휴일을 선도해왔음.

그러나 최근들어 근로자 간 향유할 수 있는 휴일의 격차가 심화되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제도를 마련해 국민 전체에 대하여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일요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4월 5일 식목일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공휴일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식목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정부는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사회적 의의가 있어 그 의미를 되 새길 필요가 있는 날 등을 국가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라.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4조).

#### 법률 제 호

#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제2호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식목일(4월 5일)
  - 6.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7. 어린이날(5월 5일)
  - 8. 현충일(6월 6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음력 15일, 16일)
  - 10.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 11. 성탄절(12월 25일)
  -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제3조(임시공휴일) ① 정부는 국가적·국제적 행사가 개최되거나 사회적 의의가 있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임시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임시공휴일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수있다. 이 경우 정부는 국회의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본다.
- 제4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현충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일 중 국군의 날

②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관공서의 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③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